



“살 빼려다...” 해외직구 다이어트식품 주의보

소비자원, 14개 다이어트 식품 검사

중국·홍콩산 등 일부 제품서 사용 금지 성분 검출 과다 복용시 복통·구토,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유발

국내에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구할 수 있는 중국 등 일부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든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 사이트로 구매 가능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위생법상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체중감량 효과가 있지만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판매·사용이 중지됐다.

센노사이드는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Bee Pollen Capsules’(중국), ‘Lida’(태국), ‘Natural max Slimming’(홍콩), ‘Sit and Slim’(중국), ‘Slimex15’(인도) 등이다.

‘Yanhee Slim Hospital Pill’(태국)에서 센노사이드가 나왔으며, ‘Slim Perfect Arm’(중국)에서는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모두 검출됐다.

이들 7개 제품 중 5개는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리콜 조치됐으나, 국내에서는 외국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체는 이 같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수입해 카카오톡·블로그 등에서 암암리에 팔고 있다.

따라서 수입·통관 시 해외 리콜 제품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 등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정위, 하반기 지방공기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고가 낙찰 수익계약 등 중점 감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올해 조사대상을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실태를 파악한 뒤 하반기 중 불공정 혐의가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고 보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한전·LH·지역난방공사 등 국가공기업 7곳과 포스코·KT 등 기간사업업체 2곳을 조사해 6개 기업에 대해 이미 수백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를 올해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중점 감시

대상이다.

계열회사를 거래단계 추가해 이권을 취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행위, 협력업체 직원 업무대행 강요,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 미지급행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주로 지방공기업을 조사하고 작년에 조사하지 않았던 국가공기업도 대상”이라며 “예비검토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

별 시정을 위해 올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한다.

먼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과정에서 거래 목적, 상대방, 규모, 조건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상·하반기에 각각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본격 시행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는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내부거래내역과 규모 등 전반적인 내부거래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업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분기별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범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만남 주선 없이 계약 해지땐 결혼중개업체가 120% 환불”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가입비의 120%)을 돌려받는다. 만남 이후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잔여금액+가입비의 20%를 환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한 뒤 만남이 이뤄지기 전 상대방이 업체에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 원을 내고 1회 만남이 성사됐는데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잔여금액)과 20만원(가입비의 20%)을 합친 100만원을 환불받

는다.

지금까지 해당 표준약관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를 돌려받는다. 만남이 이뤄진 뒤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에 잔여회수비용을 곱한 금액을 환불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비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만남 성사 이전에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잔여회수비용)을 돌려받는다. ‘10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3회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56만원(80만 원×70%)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에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연합뉴스

호텔 등급 표시 ★ 개수로 바꾼다

‘현장’ ‘불시’ ‘암행’ 평가 거쳐 등급 지정

특1등급·특2등급 등 기존의 호텔 등급이 앞으로 관광공사의 현장평가와 암행·불시평가를 거쳐 외국처럼 별(★) 개수로 표시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호텔업 등급결정 기관 승인을 받고, 새로 도입되는 별 등급제도 평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른 평가는 평가요원이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하는 ‘암행(4~5성급)·불시(1~3성급) 평가’의 2단계로 나뉜다.

현장평가의 경우 호텔 측의 브리핑과 시설 점검,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암행평가는 평가요원들이 직접 호텔에 1박2일 투숙하면서 예약·주차·룸서비스·비즈니스센터·식당 등 9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불시평가는 객실 및 욕실, 공용공간 서비스 등 4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호텔은 신청 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

의 점수를 따면 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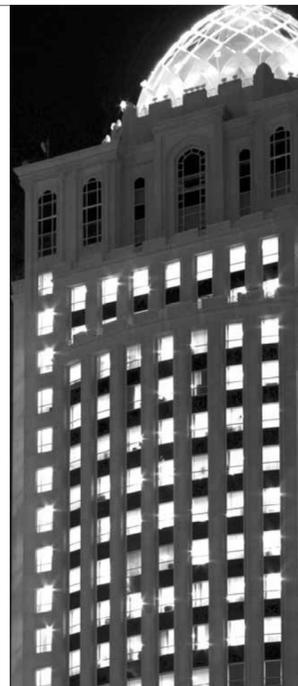
예를 들면 5성급 표시를 신청하는 호텔은 현장평가 700점, 암행평가 300점 등 1천점 만점에 90%(90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별 5개를 받을 수 있다.

평가단은 문화관광부의 호텔 등급결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참여 전문가 추천과 호텔협회·관광협회중앙회의 추천, 호텔경영학과 설치대학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명으로 이루어진다.

암행·불시평가에 참여할 호텔 근무 경험자나 소비자 평가업무 경험자는 현재 공모가 진행중이다.

관광공사는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요원들이 등급 결정을 신청한 호텔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여겠다고 설명했다.

윤선중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새로운 등급 제도 시행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 등급 표시 디자인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투기 건강기능식품 일부 제품서 ‘갈색변상’

한국소비자원은 오투기 건강기능식품 ‘뽕뽕뽕 뽕뽕 뽕뽕로 비타민C’(제조원 비엠제약) 일부 제품에서 갈색 변점이 생기는 갈변 현상(사진)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투기는 소비자원의 시정 조치 권고를 받아들여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 중 유통기한 이내에 갈변현상이 일어난 제품은 반품·환급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갈변현상 때문에 생기는 안전상 문제는 없으나 비타민C 함량이 감소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오투기는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뽕뽕뽕 뽕뽕로 비타민C’ 내용물에 갈색 변점이 있다는 위해정보가 작년 8월부터 5건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퉁이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장 1기 1실)
4층 - 35평, 주택(방3 화장 1기 1실)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보1억에 월세 350만원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천파크 빌라 34평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304호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시세 및 감정가 - 1억 9천만원
매매 - 1억 6000만원

빌라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H. 010-3605-5000

■ 다음 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301호
4층 중 3층, 정남향, 즉시 입주
현재 전세 4500만원에 임대 중
매매 - 6500만원